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757 발의연월일: 2023. 5. 2.

발 의 자:김승남・이용선・이병훈

정태호 · 임호선 · 조오섭

이상헌 · 김홍걸 · 한정애

민홍철 · 남인순 · 이학영

이인영 · 인재근 · 김정호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6월 15일 농약 비산 등 농약 피해와 관련한 사인 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농약 피해에 대한 구제 절차를 마련한 농약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음.

소요 비용과 기간의 부담이 큰 민사소송 대신 농약피해분쟁조정위 원회의 사실조사, 의견 청취, 조정을 통해 보다 쉽게 농약 피해에 대한 분쟁 해결과 보상이 가능해졌음.

그러나 현행법에서 규정한 '조정'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등과 같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수적 사항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등 조정 과정에 혼 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조정 절차 과정에서 필요한 연장, 거부, 종결 등의 조항을 신설하여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운영을 돕고, 불필요한 행정 처리 지연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안 제23조의7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7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을 "제12항"으로 한다.

- ① 조정위원회는 조정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에 조정 안을 작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 의를 받아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⑧ 조정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⑨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 2. 부정한 목적으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①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 정을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과 이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 1.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 2. 분쟁조정의 신청이 취하된 경우
- 3. 당사자의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조정절차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 4.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거나 해당 분쟁조정 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등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의7(분쟁조정절차 및 효력)	제23조의7(분쟁조정절차 및 효력)
① ~ ⑥ (생 략)	① ~ ⑥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⑦ 조정위원회는 조정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농림축산식품부
	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조정
	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에 조정안을 작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
	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
	을 연장할 수 있다.
<u><신 설></u>	⑧ 조정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지
	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u><신 설></u>	⑨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
	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u>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u>

<신 설>

<u>⑦</u>· <u>⑧</u> (생 략)

<u>⑨</u> 제1항부터 <u>제8항</u>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분쟁조정

- 2. 부정한 목적으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는경우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①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조정을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과 이유를 당사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 2. 분쟁조정의 신청이 취하된경우
- 3. 당사자의 소재불명 또는 연 락두절 등으로 조정절차의 진 행이 불가능한 경우
- 4.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조 정을 거부하거나 해당 분쟁조 정 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 를 제기하는 등 분쟁조정 절 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 우
- ① · ② (현행 제7항 및 제8항과 같음)

신청 및 조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u>.</u>